

금주 Contents - 해사정책 이슈

IMO 전략계획에 따른 성과지표 마련과 정책 이행관리가 필요

IMO 전략방향(SD¹⁾) 채택 및 이행 성과지표 개발 진행

■ 국제해사기구(IMO)는 제30차 총회 Assembly(‘17.12)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의 향후 IMO의 전략방향을 채택하였음²⁾

- IMO는 2023년까지 채택된 전략방향에 따라 조직을 운영하고 IMO의 예산과 작업 우선순위에 따라 미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
- IMO가 채택한 전략계획의 우선순위 정책은 i) IMO 협약이행의 향상, ii) 새로운 기술의 융합을 활용한 안전, 보안 및 환경 분야의 규정작업, iii) 기후변화대응, iv) 해양 거버넌스, v) 전자적 정보전달 및 교환, vi) IMO 규정의 효과성확보, vii) 기구의 효율적 운영임³⁾
- IMO 회원국은 전략계획의 이행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성과지표(PI, Performance Indicator)를 개발하여 2년 간격으로 점검하기로 결정함

■ 해상안전 및 환경에 관한 新성과지표와 전략계획(SP⁴⁾)의 주요내용은 UN의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⁵⁾)와 연계하여 목표가 설정될 예정

- IMO가 채택한 7개의 SD는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IMO의 기술지원 업무와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연계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함⁶⁾
- 안전 및 환경에 관한 新성과지표는 2023년까지 6년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IMO 전략계획에 대한 이행 성과지표 달성에 대한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함

1) 전략방향(SD; Strategic Direction)
 2) IMO 총회 결의서(Resolution A.1110(30), Strategic Plan for the organization for the six-year period 2018 to 2023 (Adopted on 6 December 2017).
 3) IMO C 117-WP.3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development of a new strategic framework.
 4) 전략계획(SP; Strategic Plan)
 5) 지속가능개발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6) IMO TC.1/Circ.69 Linkages between IMO’s technical assistance work an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또한, 협약 채택되어 이행됨에 따른 이행정도 및 협약의 국제법적인 이득과 효과성에 대한 내용을 각 회원국들이 알 수 있으므로 협약의 법적효용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성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해사안전 컨퍼런스(Safety 4SEA 2018 Conference), 7개의 전략방향은 향후 더 효과적인 규정 제정과 이행 프로세스의 발전^{a),b)}

■ IMO 전략방향은 당면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해사정책의 패러다임을 앞당기는 중추적인 역할에 가늠자가 될 것임

- IMO 전략방향은 신기술개발과 선박 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이며 특히, 자율운항선박(MASS), 기후변화대응, 오션 거버넌스의 정립, 사이버 범죄의 감소, 국제 무역활동의 지원과 인적요소에 따른 해양사고를 줄이는 역할을 할 것임
- 전략방향에 따른 성과지표의 개발과 이행은 협약이행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IMO 회원국들의 행정적 부담과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 IMO 전략계획 및 성과지표는 회원국들의 해사안전 및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분명한 미션과 비전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로드맵과 의욕적인 안전정책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IMO 전략방향과 성과지표를 고려한 해사정책의 수립

■ IMO 전략방향을 고려한 우리나라 해사정책 기본방향 및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우리나라는 9연속 A그룹 이사국, IMO 사무총장 배출국가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침체된 해운 및 조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입장에서 주로 국익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수준으로 IMO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IMO가 안전 및 환경에 관한 新성과지표 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뿐만 아니라 국내 해사정책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선진화가 필요함
- 특히, 해운 및 조선산업에서 확보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 및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전문가 중심의 해사정책 수립이 필요함
- 또한, 사이버보안에 강한 정부정책, 무인해상정보 시스템의 국제표준화 정책, 해양공간 내 활동의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에 대한 정책수립과 이행이 우선되어야 함⁷⁾

7) IMO 지속발전 전략계획(SP) 대응방안 연구, 2017. 12.

■ IMO 전략계획 기반 해사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지속적인 예산투자와 더불어 전문조직 및 종합관리 수단의 확보가 절실함

- IMO의 트렌드와 관련된 안전, 환경, 정책분야의 글로벌 인재양성에 국가의 정책적인 투자확대가 절실히 필요함. 예를 들면, 과거 10년 전의 중국과 현재 중국의 장기적인 국가주도의 정책적 투자로 IMO 이사회 의장 및 위원회 부의장 진출 성과와 양질의 의제문서 개발 제안을 볼 수 있음
-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및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등 국가차원의 계획은 상당한 수준의 발전을 가져왔으나, 정책의 이행점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차원의 노력은 부족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IMO가 전략계획에 따른 이행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성과지표 개발과 주기적인 보고서 작성, 이사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정책에 대한 성과지표도 국가계획에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총리실 등에서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IMO 전략계획 이행에 따른 정부정책 수립과 이행생태계 조성에 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

■ 정부의 IMO 전략계획 채택에 따른 국가정책의 변화와 투자확대 정책은 산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업계의 협조가 절실함

- IMO가 직면한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걸맞은 규제와 정책은 관련 산업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新전략계획에 따른 新성과지표의 달성은 산업계에 규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과도 연계되어있음(예: 선박평형수 처리, 친환경선박, 선박 사이버 보안,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등의 신규 사업항목 창출)
- 해운업계 및 조선업계에서 정부의 주요정책에 부흥하는 정보 및 데이터의 제공은 정부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정책 실증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정부의 산업 지원정책 수립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정보 및 데이터 제공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

박한선 실장(부연구위원)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hspark@kmi.re.kr / 051-797-4627)

참고자료

a) <https://safety4sea.com/imo-sec-gen-unveils-strategic-plan-for-the-organization>
(2018.07.19. 검색)

b) <https://www.ship-technology.com/news/imo-assembly-adopts-strategic-plan-2018-2023>
(2018.07.20. 검색)